##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330 제출연월일: 2024. 11. 7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,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##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1항부터 제4항까지"를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,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1조(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	제71조(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
업의 신고) ①·② (생 략)	업의 신고) ①·② (현행과 같
	음)
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	<u>&lt;삭 제&gt;</u>
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	
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	
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	
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	
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
<u>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3</u>	<u>&lt;삭 제&gt;</u>
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	
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	
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	
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	
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	
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	
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	
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	
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	
리한 것으로 본다.	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	⑤ 제1항 및 제2항
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	
및 어구판매업(이하 "어구생산	
업등"이라 한다)의 신고, 변경	

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	
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	
으로 정한다.	